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이수진 · 민병덕 · 김현정

백승아 · 송옥주 · 이재관

송재봉 · 김정호 · 김남근

민형배 · 김 윤 · 이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급여 지급기간을 '최초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기간이 불충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지급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1일'로 규정하고 있음. 난임치료 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5조등).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 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

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 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간 난 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	
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u>배우자 출산휴가</u> 를	<u>배우자 출산휴가</u>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른 난임치료휴가
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u>기간 중 최초 5일</u>.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u>경</u>우에 한정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② (생략)

2	
<u>기간</u>	
<u>경우로</u>	
<u>.</u>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u> </u>	
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	
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② (현행과 같음)	